

# 우리나라 特殊兒童 福祉制度에 關한 考察

又石女子大學 講師 李 素 希

## 《目 次》

### I. 序 論

1. 研究目的
2. 研究問題
3. 研究方法

### II. 理論的 考察

1. 特殊兒童의 概念
2. 特殊兒童福祉의 概念

### III. 史的 考察

- A. 特殊兒童福祉의 史的 展開

### IV.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 關係制度 및 機構

1. 우리나라 特殊兒童의 범위 및 현황
2.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 關係法
3.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 關係機構
4.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 關係施設
5.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 要員의 養成

### V. 論議 및 提言

### III. 結 論

## I. 序 論

### 1. 研究目的

모든 아동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生理的 文化的 요소를 충족받을 권리를 지닌다.

또한 知的·身體的·精神的 측면에서 결함이 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特殊兒童도 건전한 일반아동과 똑같은 권리를 지닐뿐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의해 이에 적합한 제반 서비스를 부가하여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우리나라 헌법 제3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며 同法 제27조와 교육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존중의 人道主義的 견지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철학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아동을 위한 福祉制度는 한 나라의 文明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인 特殊教育制度의 확립여부는 한 나라 국

가교육제도의 완성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또한 특수아동의 문제는 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社會 전체적인 복지와 안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Dunn은 특수교육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社會變化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였다.<sup>1)</sup> 특수아동의 개별적인 문제점이 성장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자신은 물론 가정 및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 科學的인 特殊教育, 行財政的 지원과 사회의 바른 인식, 國家的인 책임성을 통하여 대상아동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특수아동은 특정 장애와 결함을 制度 및 諸般 서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교정, 제거함으로써 殘存能力과 潛在能力을 최대한 발휘 사회생활에 능력껏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특수아동복지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일련의 제도적 조치로써 1977년 特殊教育振興法을 제정하였으며 U.N에서도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선언하여 특수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 L.M. Dunn, et al,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3. p.50

세계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기념하고 실제적으로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써 保健社會部가 중심이 되어 障害者福祉法의 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개발에 주력하고자 하였던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이자 세계 장애자의 해인 1981년도가 장애자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전적 계기임을 믿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特殊兒童福祉制度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앞으로 社會政策의 측면에서 요청되는 실천적 과제를 탐색코자 하며 덧붙여 일련의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무릇 特殊兒童福祉對策의 기본적 根幹은 制度的 정비와 行·財政的 지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研究問題

本考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制度的인 복지조치를 받고 있는 特殊兒童의 범위 및 현황
- 2) 特殊兒童을 위해 運用할 수 있는 關係法의 종류
- 3) 特殊兒童을 위한 中央行政機構의 職制 및 業務사항.
- 4) 特殊兒童福祉關係 民間團體의 종류
- 5) 特殊兒童福祉 서비스를 위한 傳達體制
- 6) 特殊兒童福祉施設의 종류와 형태
- 7) 特殊兒童福祉要員의 養成體制

## 3. 研究方法

연구방법은 문헌에 의한 조사연구로써 우리나라 法典을 중심으로 國會, 政府, 學界 및 民間團體에서 발행한 각종 간행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문헌수집에 소요된 기간은 1980년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자료처리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였다.

## II. 理論的 考察

### 1. 特殊兒童의 概念

특수이동을 정의하고자 하는 기도가 教育學, 社會學, 心理學, 醫學 등 여러 학문분야의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졌다.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아동의 요구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수아동으로 특수교육의 범주에 넣었으며<sup>2)</sup> 社會學的 측면에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방임, 고아, 가출, 비행 및 기타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칭하였다.<sup>3)</sup>

의학, 생리학, 유전학적 측면에서는 感覺的 障害, 畸形, 病弱 및 정신적 질환을 가진 아동을 특수아동의 개념에 포함시켰다.<sup>4)</sup>

法的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特殊教育振興法에서 特殊教育對象者로써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 및 기타 심신장애자로 대별하고 있으며 이같은 법적 전례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5)</sup>

그러나 美國에서는 優秀兒童을 특수아동의 범주속에 넣어 보통아동과 特異한 모든 아동을 특수아동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sup>6)</sup>

이와같은 여러관점을 종합하여 Dunn은 특수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있어 보통과 아주 다르고 대다수의 아동을 위해 계획한 학교 프로그램으로써는 다방면에 걸친 적응과 최적인 발달의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각자의 능력에 합당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特殊

2) 李泰榮, 金正權, 「特殊教育學」, 徵雪出版, 1977, p. 13.

3) 國會立法調査局, 「各國의 特殊教育制度」 1978 p. 177.

4) 김초강 「모자보건」, 수문사, 1978 p. 5.

5) 國會立法調査局, 전제서 p.53, p. 225.

6) 전제서 p. 11.

教授나 특수한 補助의인 서서비스가 필요로 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sup>7)</sup> 우리나라의 全國教育研究委員會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인 제반 특성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보다 훨씬 편차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로 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sup>8)</sup>

## 2. 特殊兒童福祉의 概念

특수아동복지란 특수아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결함과 장애를 될 수 있는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혹은 동등한 생활조건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을 말하며 아울러 그 家族으로 하여금 특수아동의 養育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므로써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을 말한다.

미국의 公法 94-142에서는 특수장애자 및 그 가족을 법적 조치대상으로 규정하여 특수아동복지개념을 실제 서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sup>9)</sup>

한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福祉對策의 特質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障害者問題의 複雜性 장애자는 手足과 언어등의 기능이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라는 사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여러가지 문제 즉 취학 취직 결혼등에 미치는 문제로 복잡성을 띤다.

2) 障害者福祉의 綜合性 장애자의 全人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유기적인 관련이 요구되며 장애자의 문제가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家庭 및 社會, 國

家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종합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3) 障害者福祉의 力動性 장애자의 복지가 처음에는 위정자 전문가 중심의 下向의 복지체제에서 장애자 자신의 權利意識이 높아져 사회의 이해와 함께 장애자 자신의 권리요구에 의한 복지체제로의 변모등이다.<sup>10)</sup>

장애자 복지대책의 구조와 방향은 장애자 개개인의 독특한 요구를 고려하여 각각의 對策이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政策的, 社會的, 教育的, 職業的, 醫療的, 社會心理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각 對策의 성격에 따라 장애 발생의 事前的 대책과 事後的인 치료대책으로 크게 나누며 치료대책은 다시 단순한 保護中心과 개발중심의 再活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기능은 장애의 정도가 두꺼운수록 보호의 비중이, 가벼울수록 재활의 비중이 강조되며 展開方法面에서도 예방 및 조기발견은 집단적 대책이 요구되고 치료적 대책분야는 1:1의 개별방법이 효과적이다.<sup>11)</sup>

## Ⅲ. 史的 考察

### 1. 特殊兒童福祉의 史的 展開

古代社會에서는 社會의 성원으로써 그 사회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者는 추방하거나 生存權을 박탈하였다.

그리스인은 장애자를 食虫이라 하여 山野에 버리고<sup>12)</sup> 스파르타法典에 의하면 국가적 번영과 부강이 인간 최고의 존엄이라는 사상

7) Dunn 전제서 1963년판 p.3.

8) 金東極 「特殊教育」 배영사 1978. p. 30.

9) Bill. R. Gearheart & Mel W. Wishahn, 「The Handicapped Student in the Regular Classroom」 the C.V. Mosly Co, 1980. p. 20.

10) 申守植, 「社會保障論」 博英社, 1978, p.363

11) 서울시, 자령회, 「心身障害兒의 福祉와 教育對策의 方向」 1979. p. 37~38

12) 川本字之介, 「總說 特殊教育」 東京, 青鳥會, 1954, p.15.

하에 신체허약자, 지능이 열등한자, 기타 불구자를 산중에 버릴 것을 허용하였다.<sup>13)</sup>

로마에서는 탄생시에 뚜렷한 장애를 보이는 아동은 광장에서 絞首시켰으며 출생시는 건강하였으나 3세전에 장애를 수반한 아동의 경우도 살해할 것을 허용하였다.<sup>14)</sup>

그러나 Nicaea 宗教會議(A.D.325)이후 기독교의 발전 보급과 함께 종교적 자선사업 배경을 중심으로 중세 초기에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sup>15)</sup>

우리나라도 三國史記에 新羅 儒理王때 과부 홀아비, 고아, 폐질자에게 給食 養護한 기록이 있다.<sup>16)</sup>

이와같이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미신 유기가 자행되었던 당시 사회에서도 일단의 구제가 행하여졌으나 이것은 단순한 자선구제, 인종의 차별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文藝復興이후 人文主義教育思想의 대두, 宗教改革을 통한 일련의 사상적 진전으로 현실적, 자연적 인간의 문제를 重視하는 人道主義 観点에서 장애아를 위한 교육가능성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덧붙여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래의 미신적 편견에 의한 運命論적인 장애관을 탈피하여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근거위에서 인간의 장애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6C에 접어들면서 特殊兒童教育이 新敎 승려를 중심으로 개인 내지는 실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8C J.J. Rousseau의 자연주의사상에 입각하여 民族的 宗教的 差別을 배제한 博愛主義教育思想은 特殊兒童을 위한 學校教育을 실현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1755년 프랑스의 L'Epée에 의해 세계 최초의 特殊學校인 聾學校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특수아동복지의 영역이 敎育적 측면에서 추진되어 오던 것이 19C~20C 초기에 이

러 社會制度的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시기에 특수아동복지를 위한 형식적인 法制度를 마련하였다.

日本의 心身障害者福祉法(1949), 精神薄弱者福祉法(1960) 心身障害者對策 基本法(1976)과 美國의 障害兒童教育法(1975), 再活法(1973) 우리나라의 特殊教育振興法(1977)등이다.

또한 特殊兒童의 福祉 증진을 위한 세계적 관심사로서 1981년이 “세계 장애자의 해”로 선언되어 국제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게 되었다.

## IV.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關係 制度 및 機構

### 1. 우리나라 特殊兒童의 범위 및 현황

우리나라 특수아동의 범위는 관계법에서 볼 수 있듯이(표 1참조) 심신장애아동을 말하며 관계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및 지체부자유아동으로 대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수아동의 현황은 심신장애아동 현황으로 볼 수 있다. (표 2참조)

우리나라는 특수아동은 제도적 창구로써 파악할 수 없으며 보건사회부 소관업무로써 1979년 10월 전국의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전문기관에 의뢰 표본조사로써 실시되었다.

장애아동의 현황은 전 아동인구의 2%인 277,975명이며 지체부자유아동이 가장 많았다.

문교부에서는 아직 특수교육아동의 현황과 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關係法

우리나라는 특수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基本法은 없으며 관계법으로 兒童福利法, 敎育

13) A.O. Heck,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New York. Mc Grow Hill Book 1953, p.119

14) K.W. Hodgson, 「The deaf and Their Problems」, New York, Phical Literary, 1954. p. 70

15) 荒川勇, 「歐米鯉育通史」東京峯文閣, 1970, p.13.

16) 李榮選, 「社會福祉行政」 대구 螢雪出版, 1963. p.14.

法, 特殊教育振興法, 生活保護法, 國民福祉年金法이 있다.

<표-1> 關係法上 特殊兒童의 범위

	法條序	特殊兒童
兒童福祉法	제 1 조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기타의 경우,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없는 경우.
教育法	제 143 조	맹아, 청농아, 정신박약아, 기타 심신장애아동
特殊教育振興法	제 3 조 (特殊學校對象)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정신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의 심신장애자
	제 145 조 (特殊學級對象)	신체허약자, 정신이부자, 정신박약자, 농아, 난청자, 맹아, 난시자, 언어질자유자, 기타 불구자.
生活保護法	제 3 조	불구, 폐질, 손상 또는 정신,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

<표-2> 연령 및 장애영역별 아동현황

장애영역	연령					계
	0-4	5-9	10-14	15-19		
지체장애	6,182	27,434	42,397	52,917	128,932	
시각장애	1,087	4,892	6,305	7,393	19,677	
청각장애	1,631	6,524	9,242	11,743	29,140	
언어장애	3,036	13,657	15,608	15,608	47,929	
정신장애	1,739	12,206	19,350	19,024	52,319	
계	13,675	64,712	92,902	106,685	277,975	

1979. 12. 보건사회부

1) 兒童福利法(1961년)——同法 제1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기타의 경우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없는 경우 보호토록 되어 있다.

同法 제 3조에 아동복지시설로써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이 시설의 의의를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에 특수아동의 구체적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教育法(1949년)——同法 제 9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同法 제 81조에 特殊學校의 설치를 정하고 있다.

同法 제98조에는 病弱등으로 인한 의무교육의 면제 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143조에 특수학교의 目的을, 同法 제144조에 서울 부산 및 각 市·道의 특수학교 설치 의무를, 同法 제145조에 特殊學級の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3) 特殊教育振興法(1977) 제정)——同法 제 1조에 시청각 장애자를 심신 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同法 제 2조에 특수교육,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 3조에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기타의 심신장애자로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①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 ② 생활기능 및 회복을 위한 교육
-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지도
- ④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개선
- ⑤ 특수교육담당교육 양성과 연수교육 및 우대책
- ⑥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 및 시설설비와 확충과 개선(療育施設, 職業輔導施設, 기숙사시설의 포함)
- ⑦ 특수교육의 教材 教具 및 補裝具의 연구 개발
- ⑧ 직업보도시책의 강구
- ⑨ 점자도서관등의 설치 경영과 조성

⑩ 장학금 및 기타 특수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同法 제 5조에 특수교육기관중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아동의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同法 제 6조에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보조, 同法 제 7조에 교육과정 및 교육도서에 관해, 同法 제 8조에 장학금의 지급, 同法 제 9조에 학비감면, 同法 제 10조에 특수교육대상자입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 11조에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아동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同法 제 12조에 특수교육기관내에 직업보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同法 제 13조에 특수교원의 자격과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同法 제 14조에 특수교육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 사항을 명시하고 同法 제 15조에 點字 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同法 시행령(1978 대통령령) 제 2조에 특수교육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同 시행령 제 16조에 특수교육기관내의 직업보도시설의 설치를 同 시행령 제 17조에 특수교육요원의 자격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同 시행령 제 18조에 특수교육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年 1회 이상의 연수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同法 시행규칙(1978 문교부령) 제 2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剗別을 위하여 서울, 부산 및 道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生活保護法(1961년) — 同法 제 3조 4항에 보호대상자로서 불구, 폐질, 손상 기타 정신 및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로서 同法 제 25조 4, 5항에 보호시설과 재활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 國民福祉年金法(1973년) 同法 제 42조

~46조 사이에 障害年金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 3.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關係機構

특수아동복지관계기구는 中央行政機構와 民間團體로 대별된다.

1) 政府 우리나라의 특수아동을 위한 행정기구는 特殊教育和 特別福祉서비스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은 文教部가 관장하고 제반 복지서비스는 保健社會部가 관장하는데 엄격한 구별을 하기 어렵다. 특수교육기관에서도 교육 및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서도 교육 및 직업개활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 職制 및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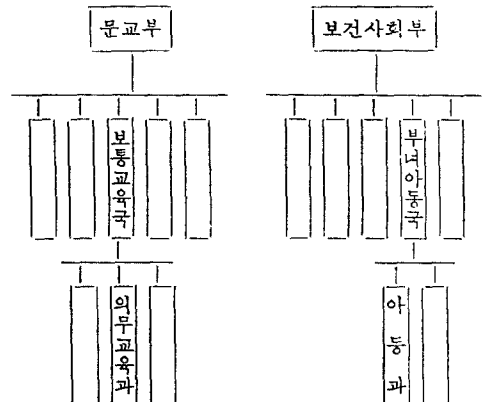
#### ① 업무

의무교육과	}	· 특수교육의 진흥계획
		· 특수학교의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아동과	}	· 심신장애아동의 실태조사 및 복지대책
		· 심신장애아동 보호시설의 지도 감독

<표 3> 특수아동복지 담당 행정부서

(1980. 1. 1 총무처)

#### ② 직제—교육부문— —복지, 서어비스부문—



1) 民間團體 민간단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등록된 상급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

으며 法人의 경우 法人課의 행정지도를 받는다.

교육부분은 문교부의 시설 및 서어비스는 보건사회부와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특수아동복지를 위한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특수교육협회
- ② 한국특수교육학회
- ③ 자행회
- ④ 특수교육연구회
- ⑤ 한국정신박약아보호협회
- ⑥ 한국정신박약아부모회
- ⑦ 한국정신박약아교육연구회
- ⑧ 한국소아마비아동특수교육협회
- ⑨ 홀트아동복지회
- ⑩ 한국약사재활협회
- ⑪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 ⑫ 영남특수교육학회
- ⑬ 한국재활의학협회
- ⑭ 삼육아동재활원
- ⑮ 정립회관
- ⑯ 한국뇌성마비아보호협회

4.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關係施設

우리나라의 특수아동복지시설은 크게 教育施設과 保護施設의 두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시설은 특수교육법과 교육법에 의하고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준거한 것이다. (표 4 참조)

재활시설과 의료시설은 뚜렷한 시설형태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과 보호시설에서 함께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즉 분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교육시설, 보호시설 모두 장애영역별로는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정도외에는 장애의 정도는 따른 분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특수아동복지시설의 현황을 교육시설과 보호시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표 6, 표 7 참조)

1) 保護施設 1979년 12월 31일 현재 특수아동복지시설은 국립을 포함하여 54개 시설로써 총 4705명이 수용 보호되어 있다.

<표-4> 관계법상의 특수아동복지시설

관계법	법조항	복 지 시 설
아 동 부 리 법	제 3 조 (아동복지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청농아보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교 육 법	제 143 조 (특수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
특수교육진흥법	제 2 조 2 호 (특수교육기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육기관
생 활 보 호 법	제 25 조	의료시설 재활시설

<표-5> 심신장애아시설

구 분 시 도 별	심 신 강 애 아									
	소 계		지 체 부 자유		정 박 아		맹 아		농 아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54	4705	16	1652	20	1930	8	455	10	662
서울	7	444	1	265	4	319	1	67	1	93
부산	9	642	3	285	4	213	1	76	2	68
경기	10	770	2	121	5	477	1	74	2	98
강원										
충북	4	316			1	101	2	125	1	90
충남	4	480	1	82	2	255			1	143
전북	2	110	1	84			1	26		
전남	5	575	1	134			2	87	2	154
강북	7	815	4	531	3	288				
경남	5	228	3	150	1	62			1	16
제주										
국립	1	221			1	221				

(1979. 12. 31 보건사회부)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1개의 보호시설조차 없으며 서울 부산 경기지역을 제외한 도에도 장애영역별 시설이 고루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2) 教育施設 우리나라 특수아동복지 교육시설은 1980년 4월 1일 현재 文敎部에 의하면 56개교에 8,994명이 취학하고 있으며 특

수학급은 354학급에 6,04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特殊學校 현황

(1980. 4. 1 문교부)

시	각	청	각	정	박	지	체	비	고	계
서울	2	3	6	2	공용학교 1개교					12
부산	1	3	2		공용학교 1개교					5
경기	1	1								2
강원	1	2	6							9
충북	2	1	1							4
충남	1	1	2	1	공용학교 1개교					4
전북	1	3	1		"					4
전남	2	2	1							5
경북	1	2	3	2						8
경남		1	2		공용학교 1개교					2
제주	1	1			※공용학교 1개교					1
계	13	19	19	5						56

<표-7> 각 시도별 특수학급현황

(1980. 4. 1 문교부)

시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급수	6	1	48	42	24	34	33	52	60	5	6	351
아동수	118	11	966	612	507	725	516	773	827	881	115	6,045

### 5. 特殊兒童福祉關係要員의 養成制度

1) 特殊教師 우리나라 특수교육요원의 자격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및 장애영역변에 따른 전문교사와 보조교사의 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학수준에서 특수교사는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사회사업대학의 특수교육학과에서 연 110명이 배출되고 있다.

2) 療育教師 요육교사는 주로 物理치료사로써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 수준의 7개교에서 연간 1,560명이 배출되고 있다.<sup>17)</sup>

3) 再治醫師 우리나라에서 재활의학은

강의하고 있는 대학은 7개대학이나 전문의제도가 없어 전문적 재활의사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 V. 論議 및 提言

本考에서는 우리나라 特殊兒童福祉制度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특수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연구문제에 의해 나타난 결과에 따라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論議와 함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制度의인 福祉조치를 받고 있는 특수아동의 범위 및 현황—— 특수아동의 범위에서 관계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特殊兒童(The Exceptimal children)과 心身障害兒童(The Handicapped children)의 개념이 미분화되어 있다.

20C 초에는 특수아동이 일반적으로 맹아, 농다,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등 심신장애아동에 국한하였으나 현재는 사회구조의 복잡 및 다양화에 따라 生態學的 측면에서 아동의 發達的 환경의 변화로 언어장애, 허약아, 간질, 약시, 난청, 정서장애, 학업부진, 문화실조아 및 우수아동 등으로 그 대상이 다양화해졌으며 장애정도나 아동의 행동특성에 따라 더욱 細分化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교부는 관계법에서 특수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심신장애아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단지 特殊學級의 對象者에게 난청아와 약시아동을 첨가시키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요보호대상아동으로 심신장애아동을 대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관계제도상 특수아동의 개념정립이 확립되어 이에 의한 제도적 조치가 취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을 기해야 하리라고 본다.

17) 서울시, 자향회 「심신장애아의 福祉와 교육대책의 방향」 17)1979, p.61.

18) 閔恩植 「心身障害者再況事業의 現況과 對策」 社會福祉 1979, 여름호 p.99.



특히 특수아동의 범위가 敎育學, 社會學, 心理學의 觀點에서 확대되는 것을 고려 特殊敎育振興法의 목적에서 명시한 심신장애아동에게 국한하지 않고 일반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는 아동의 최적인 발달을 기할 수 없는 범위 까지 확대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수아동의 현황과악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건사회부 아동과의 소관업무로서 1979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반적인 심신장애 아동의 判別基準에 따라 標本調査가 실시되어 推定인구가 발표되었다. 특수아동의 현황과악은 특수아동복지의 정책수립 및 관련 행정조치의 기초자료로서 그 意義가 큰 바 判別기준이나 조사방법에 대한 면밀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特殊敎育判別委員會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의한 判別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前述한 특수아동의 대상 확대에 따라 判別기준을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며, 또한 特殊敎育對象者로서의 아동과 心身障害兒童의 判別기준 및 한계에 대해 理論的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2) 特殊兒童을 위해 運用할 수 있는 判別법 의 종류——우리나라는 특수아동복지관계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아동복지관계 立法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근간 보건사회부가 중심이 되어 心身障害者 福祉法을 제정한다고 한다.

앞으로 制定할 심신장애자복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면 法運用의 질서 및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아복지대상자와 장애정도에 따른 諸 福祉對策에 대한 사려깊은 입법조치가 요청된다고 본다.

장애자의 全人的 복지를 추구한 나머지 제반 측면에서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特殊兒童福祉體制가 二元化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조치의 重複 및

산만화에 따라 실제적인 복지대책의 충실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부문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이에 의한 行政조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제정할 心身障害者福祉法을 基本法으로 保健社會部는 心身障害兒童만을 關장하되 거의 職業再活이 不可能한 重度障害者를 그 대상으로 施設 및 의료보호로서 이에 적합한 制限조치를 취하였으면 한다.

文敎部는 現行 特殊敎育振興法을 강화하여 職業재활이 가능한 輕度障害者 및 社會心理的 장애아동과 優秀兒童을 關장토록 법적 運用한 계를 명확히 설정하였으면 한다.

또 二元化되어 있는 福祉體制에서 發生되는 여러문제의 해결 및 상호협조를 위하여 국무총리산하에 整調機構를 설치하여 補充體制를 이루었으면 한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서 修正, 強化되어야 할 사항은 특수아동개념의 확대 및 이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확대, 특수교육아동인구의 과악을 위한 제도적 조치, 특수교육아동을 위한 判別기구의 강화, 特殊敎育施設로서 就學前 敎育施設의 설치, 특수교사 및 특수요육교사의 양성제도의 명문화, 領域別 敎育조치의 확대 개선등이다.

또한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후의 고용촉진을 위한 關連조항을 두어 실질적인 社會復歸를 조장하여야 할 것이다.

3) 特殊兒童을 위한 中央行政機構의 職制 및 業務사항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 의하면 特殊兒童福祉를 전달하는 독립된 행정기구가 없다.

보건사회부의 심신장애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심신장애자는 108만명으르 추산되어 늘어나는 장애인구 및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실시를 위하여 독립된 行政部署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재 課조차도 없는 행정부서를 文教部 保健社會部 共히 局으로 승격시켜 특수아동 및 전체장애자 복지를 전담케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4) 特殊兒童福祉서비스를 위한 傳達體制——우리나라의 경우는 特殊兒童들이 制度的인 조치로써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수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필요에 의해 각기 해결방안을 찾도록 되어 있다.

日本은 신체장애복지법에 의해 신체장애兒童의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제를 실시 신체장애자수첩을 교부받는 동시에 再活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sup>18)</sup>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신체장애아동을 숨기고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제도적인 서비스 전달체제의 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保健所를 중심으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현재 兒童福利指導員을 통하여 제반 서비스와 相談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5) 特殊兒童福祉施設의 種類와 形態——우리나라의 특수아동복지시설에서 살펴보면 아동福利法에 의한 福利施設로써 領域別 심신장애아동보호시설과 教育法에 의한 特殊學校로 福祉施設이 대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障害의 程度와 性格에 따라 이에 적합한 복지시설이 細分化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特殊學校에 就學前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고 通學 및 訪問教師制, 統合教育등 제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청되며 施設保護에서도 의료와 직업보도를 함께 취급하던 것을 분리하여 專門化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아동의 신체 및 행동특성을 고려한 文化施設도 설치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들은 일반아동과 달리 행동반경이 좁고 外界와의 접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한 教育工學的 설비가 갖춰진 시설이 한층 요구되는 것이다.

6) 特殊兒童福祉要員의 養成——특수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제 분야중에서도 특히 교육, 의료, 직업재활등 여러분야의 공동노력이 필요로 되는 綜合福祉분야이므로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요원의 확보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特殊學校 教師나 療育教師를 위한 制度的 養成體制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요청되며 의료재활분야에서도 의과대학내에 재활의학 강좌를 대대적으로 개설하는 한편 專門醫制度를 두어 이 분야의 전문화를 기해야 하리라고 본다.

## VI. 結 論

本考의 고찰 결과 앞으로 特殊兒童福祉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아동의 현황 및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제반 복지대책이 제도적 조치로써 강구되어져야 하겠으며, 이는 特殊兒童의 教育學的 측면뿐 아니라 社會心理 的학적 제 관점에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특수아동복지 사업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 比較政策的 측면에서도 논의 연구되어져야 하겠으며 특수아동복지가 종합복지분야임을 감안 각각의 영역별에 의한 연구와 제도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실시되어 특수아동의 全人的 복지 추구를 위하여 가정,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참고 문헌

1. 法典 현안사 1980년판
2. L.M. Dunn et. al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New York, Holt Rineart and winston Inc, 1973.
3. 李泰榮, 金正權, 「特殊教育學」螢雪出版, 서울

1977

4. 國會立法調查局, 「各國의 特殊教育 制度」1979
5. 金東極「特殊教育」배영사, 서울. 1978.
6. 申守植「社會保障論」博英社, 서울. 1971
7. 金炳夏「特殊教育的 歷史的 理解」대구, 螢雪出版, 1977.
8. Bill. R. Gearheart, *The handicapped Student in the classroom*, Masby, stlonts, 1980
9. 서울시 자행회「心身障害兒의 福祉와 教育對策」
10. 川本宇之介, 「總論 特殊教育」東京, 青烏會 1954.
11. 김초강, 「모자보건학」수문사, 1978.

## Abstract

# A Review of Literature o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of Exceptional Children in Korea

*Lee, So-Hee*

The issue presen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Legislative actions of welfare-related law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 legislative base for the evolution has been yet weak and ambiguous at best for a formalization of what should be considered accepted practice and effective action in providing handicapped child and their parents educational rights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y are under remote control of partial factor subject to social welfare law for children, and public law for education, promotion law for the exceptional child education, protection law for public aids.

2. Organization of government for the welfare service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re is no sign of a push toward consolidation of effort for the welfare service of the exceptional children in this country that seeks to recapture a sense of unity, of coherence, of completeness from a reality made up of discontinuous fragments of humanitarian effort. This presently that, as for the education of the exceptional child, by the section of the exceptional education in MOE (Ministry of Education), and/or as for welfare services and promotion actions, by the section of child welfare in MHS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ne door type operation rooted in the specialization, and limited resources to evolve multi-purpose agencies that undertake to provide a broad range of tangible and concrete services, as well as supportive counselling and assessment, under a single management which plans and directs the allocations of resources, should be followed.

3. Facilities and recruitment of teacher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In this country there are 54 facilities for special services, 56 schools for the exceptional education, and 3 colleges and equivalents that provide teacher training services leading to certification with 110 annual graduates.

However, curriculum for exceptional children should be rearranged and reconstructed.

Conclusion; Only as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community, this country produced a succession of specific purpose activities, over period of time, that accumulated to form the present network of hundred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Periodically major efforts were launched to revitalize or to improve the help-giving system.

But they lack specialization to be effective, and the nature of multi-purpose center tends to be vague for the classified handicapped.

Therefore, there, should be linkage between policy maker and community services to

maintain some coherency in preventive care, treatment, and after cares.

At last, the effects of the current concept "the exceptional child" involved with thier families, and their neighborhood should be considered in view of the people who consist about 25% of the total population.